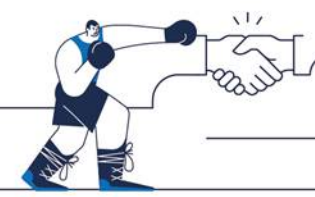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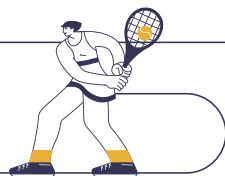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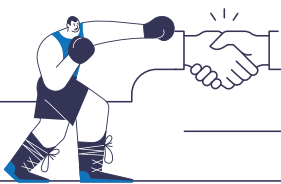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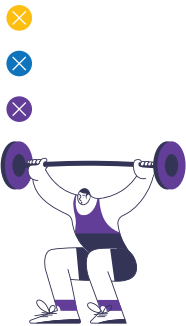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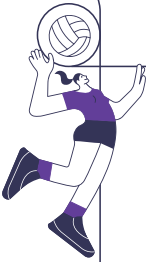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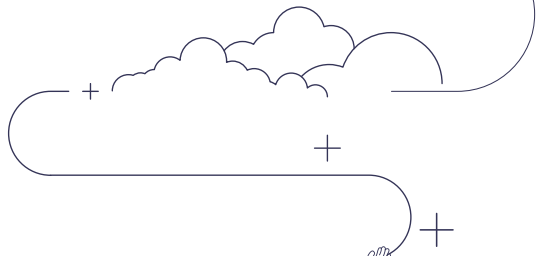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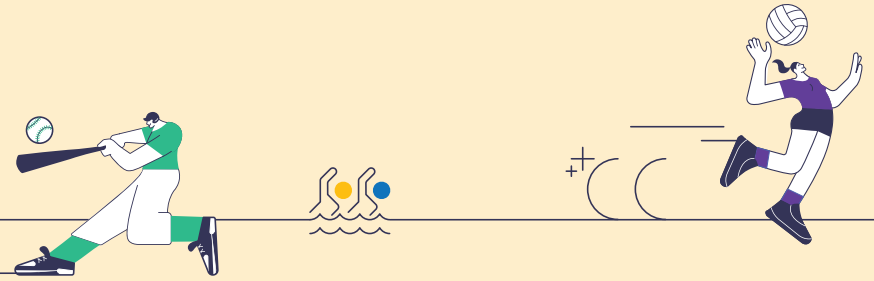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안내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의 의의

- 법적 근거 새롭게 마련
- 지원대상 정의 및 대상 확대
- 신규사업 시행 기틀 마련



체육인 복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을 법으로 정의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규사업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추후 확대 가능 사업

진로·창업 지원 /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체육인 공제사업

1

국가대표선수·지도자
복지후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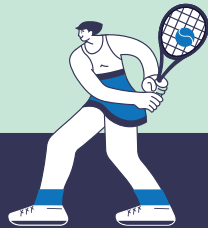
09

경기력 성과포상금	10
●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10
●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13
생활지원금	14
교육지원금	15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15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16

2

보험지원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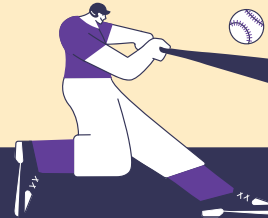


3

학생·원로
체육인 지원

23

장학사업	24
● 체육인재 장학지원	24
● 체육장학금	26
원로 체육인 지원	27



4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29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변화

기존 체육인복지 대상자 범위



변화된 체육인복지 대상자 범위



체육인의 정의(인정 범위)

선수

아래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으며,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지도자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으며,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된 사람

심판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경기단체에서 심판으로 5년 이상 등록된 사람

국제대회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전국대회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후생금



경기력 성과포상금

-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생활지원금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경기력 성과 포상금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대회 입상을 통하여 획득한 포상금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

포상금 평가점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10]

(단위 : 점)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45	12	7	-	-
	2~3년 주기	30	7	5	-	-
	1년 주기	20	5	2	-	-
장애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30	8	5	-	-
	2~3년 주기	15	4	3	-	-
	1년 주기	7	2	1	-	-
세계대학경기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지급시기

연중지급



월정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매월 20일 지급

* 지급기간 :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일시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달의 20일에 일시 지급

포상금종류 및 지급기준

	평가점수	산출방식	비고
월정금	10~30 점	10점당 15만원	-
	31~100점	10점당 7.5만원	-
	101점~110점	10점당 2.5만원	-
일시장려금	(최대)110점	100만원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지급
	110점 초과	10점당 150만원	초과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10점당 500만원
일시금	1~30점	1점당 112만원	-
	30점 초과	1점당 56만원	-
특별장려금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등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한 선수 중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일시금 450만원 지급

※ 평가점수 20점 이상 시,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가능

지급절차



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자 → 경기단체 취합 → 공단



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

공단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지급

공단 → 대상자

1

월정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월정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 (국제대회 종료 다음 달 등)부터 사망한 달 까지 지급됩니다.

2

월정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처음 월정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나면 향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선택 시에 신중히 선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A

3

성과포상금이 지급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특정 법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경우 지급이 일시 보류됩니다.

4

이전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같은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전과 같은 지급방식을 유지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임을 감안하여 '연금'의 용어 대신 '포상금'의 명칭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코치 등 지도자

지급기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10점 이상 메달을 합산하여 지급

평가점수	산출방식
10 ~ 90점	10점당 334만원
90점 초과	10점당 167만원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달의 20일에 일시 지급

지급절차



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자 → 경기단체 취합 → 공단



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

공단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공단 → 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 상세자격요건은 모집공고 참조

모집시기

연초공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의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사업기간내)

선정 및 지급절차



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자 → 경기단체



경기단체장 추천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

공단



생활지원금 지급

공단 → 대상자

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대상

국내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모집시기

상·하반기 공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kspo.or.kr>)의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내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지원 (1인당 1회만 지원)

지급중지 및 취소

요구서류 미제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 미만인 경우 등

선정 및 지급절차



대상자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자 → 경기단체



경기단체장 추천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

공단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공단 → 대상자

교육지원금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대상

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어학시험 및 기준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지원기간

대학 과정 : 2~4년, 대학원 과정 : 2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 1년 이내

지원범위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급중지 및 취소

요구서류 미제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 미만인 경우, 체육 이외 분야 유학

지급요건

귀국 후 지원기간 이상 체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

선정 및 지급절차



어학시험 및 기준표

구분	주관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① 영어	NEW TEPS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600점 만점 기준 236점 이상
	TOEIC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TOEFL iBT	한미교육위원단	120점 만점 기준 71점 이상
② 중국어	HSK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신 HSK 5급 180점 이상
③ 일어	JPT	駿台(순다이) 학원(동경고등수험강습회)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N3 이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외국어 시험 및 그밖의 언어	공인 외국어 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입학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보험지원금



⋮

보험지원금

보험지원금



지급대상

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내용



상해·질병 보험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지급기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1년 단위 가입)

* 보험가입 및 사업 추진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행



학생·원로 체육인 지원



⋮

장학사업
- 체육인재 장학지원
- 체육장학금



⋮

원로 체육인 지원

장학사업 체육인재 장학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초·중·고 재학 학생선수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단, 사용부분 한정)



스포츠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시설 이용
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

지원방식

바우처 포인트 지급(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정산)

사업기간

매년 10개월 이내(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및 지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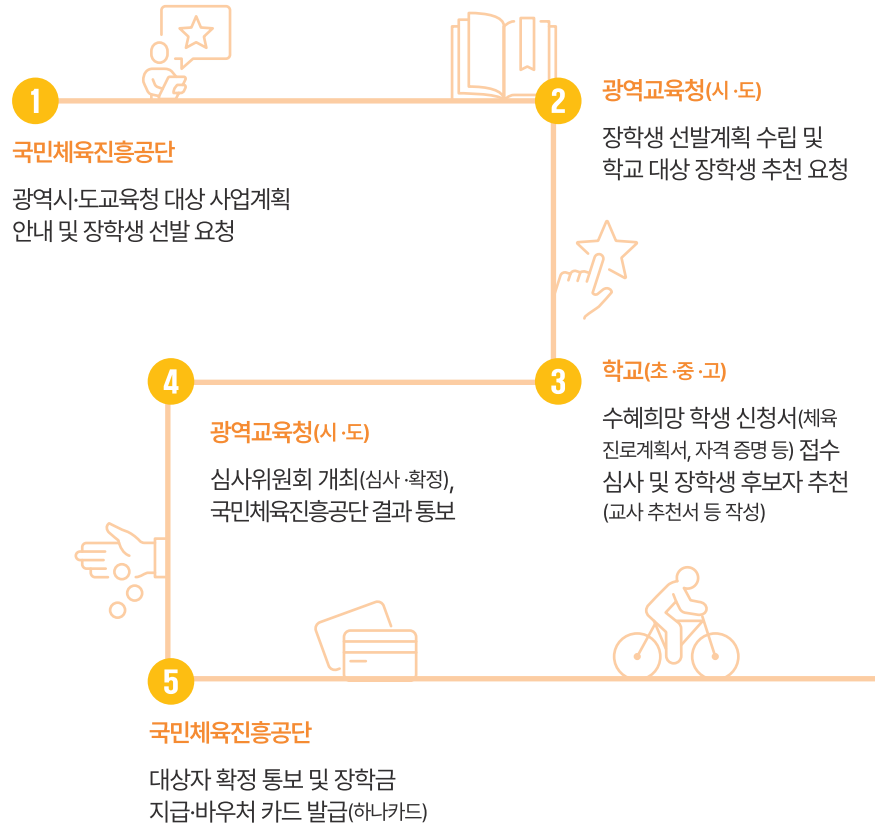
학교추천



광역교육청(시·도)
심사 및 선발



공단확정



장학사업 체육장학금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주최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상위 입상한 학생선수

지급기준

재학중인 교육기관별 장학금 차등



초등학생
30만
중학생
50만
고등학생
100만

비장애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100만
대학생
150만
200만

장애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150만원
대학생(학사학위과정)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및 지급절차



대상자 추천 요청

공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장, 대한
장애인체육회장 추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
체육회 →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대상자 선정

공단



체육장학금 지급

공단 → 대상자

원로 체육인 지원

지급대상

체육진흥의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내, 진료 일수가
180일 이내인 진료금액 지원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지원

선정 및 지급절차



대상자 신청

신청자 → 공단
신청자 → 경기단체 →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

공단



원로 체육인 지원금 지급

공단 → 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지정대상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

- 1 사망한 경우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심한 장애를 갖게된 경우

지정 및 보상절차



지원시기

연금, 간호수당
매월 말일 지급

그외
수급자 신청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금	구분	유공자	유족	본인 또는 유족 1명
	지급액(천원)	2,245	25세 미만 자녀/ 미성년 동생 1,400 그외 1,200	
생활 안정수당	연금수급자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			
	구분	지급액(천원)		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인 가족 이하	200	
4인 가족 이상		2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층	3인 가족 이하	150		
	4인 가족 이상	200		
간호수당	구분	월 지급액(천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2,100		
사망 위로금	구분	지급액(천원)		유족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504		
의료지원	체육유공자 지정사유가 된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진료비, 보조 기구 구입·수리비용 예산 내 지원			본인
교육지원	중학교 이상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 학비와 학습보조비 지원			
	구분	지급액(천원)		본인, 배우자, 자녀 (30세 미만)
	수업료 등	본인 납부 입학금·수업료 전액(사립대학은 1/2 금액)		
학습보조비(연)	(중학교) 120, (고등학교) 140, (특수학교) 700, (대학교) 230			
취업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훈련비용(월 40천원)			
	2.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등에 드는 비용 일부			
	- (유공자) 수강료의 1/2, 연간 500천원 이내 - (배우자·자녀) 수강료의 1/2, 연간 250천원 이내			
주택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분양 특례 - 신청일로부터 입주할 때 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본인 및 유족
생업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 분야 공공기관의 소관 시설 안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 시 우선 반영			본인 및 유족
그 밖의 지원	요양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비용의 80% 이내 지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부모
	고공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공, 공원, 기념관, 공연장, 수목원 등 이용 시 무료 또는 요금 할인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유족 선순위 유족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대상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
지원기간	국제대회 종료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 까지
연금종류	월정금, 일시장려금, 일시금, 특별장려금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감독·코치 등 지도자
지원기준	지도 선수의 메달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이면 10점 단위 지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사업기간 내)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대상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내용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내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1인당 1회 지원)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대상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내용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의 입학금·등록금, 항공료, 체제비 지원

보험지원금

지급대상	국제경기대회 혹은 이를 위한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내용	상해·질병 보험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체육인재 장학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초·중·고 재학 학생선수
지원내용	1인당 월 40만원 바우처 지원

체육장학금

지원대상	체육회·경기단체 주관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선수
지원내용	1인당 30 ~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재학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원로 체육인 지원

지원대상	체육진흥의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 진료비, (생활비 지원) 1인당 최고 1,000만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기·훈련·지도 중 사망한 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자 등
지원내용	연금(유공자,가족) 및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

